

정화조 청소 과업지시서

1.【목적】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의거 단독정화조 청소대상 건축물로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정화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, 오.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점검하는 용역으로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시공(청소)토록 한다.

2.【과업범위】

서울창업허브 정화조 387.50m² 1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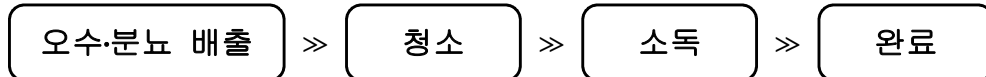
3.【일반사항】

- 1) 본 용역작업은 서울산업진흥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(청소)한다.
- 2) 본 용역으로 인하여 출입하는 작업인 명단은 사전에 제출토록 한다.
- 3)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역서에 준한 규격제품으로 반드시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한다.
- 4) 본 용역업체는 시공(청소)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며, 발주자는 용역업체가 청소용역임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기간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- 5) 용역업체는 시공(청소)작업을 당일 마감으로 하되 감독자와 상의하여 시간대를 선택하고 신속한 청소를 원칙으로, 그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한다.
- 6) 본 용역업체는 시공(청소)과정을 전,중,후 또는 구간마다 정화조내 사진을 찍어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하며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조립 정비 등은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한다.
- 7) 본 용역업체는 시공(청소)중 안전사고가 없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, 작업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일체의 민.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.
- 8) 용역업체는 시공중 타 시설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이 발생시는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.
- 9) 용역업체는 정화조 청소 후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 및 관할지역내 관청 (마포구청 환경청소과) 담당 감독자에게 제출한다.

4.【안전관리 및 점검사항】

- 1) 현장 책임자는 사전에 현장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모든 작업원에게 숙지시킨다.
- 2) 모든 작업원이 작업전 작업복과 장화, 장갑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, 작업후 반드시 소독한다.
- 3) 정화조내에 남아있는 오수 및 분뇨가 없는지 확인한다

5.【작업순서】



- 1)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화조 주변을 조사한 후에 작업기기를 정돈한다.
- 2) 청소 작업에 필요한 기기들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.
- 3) 청소전 정화조 내부를 촬영한다. 이때 정화조내 벽면의 균열 부분과 외부에 의한 오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이상 유무를 발견시에는 그 부분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사진촬영을 하여 자료로 남긴다.
- 4) 정화조내 오수·분뇨를 배출하고, 벽면, 바닥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, 청소 및 소독을 하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.
- 5) 본 용역 일일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.

6.【기타사항】

- 1) 작업을 마친 후 감독관에게 반드시 검수를 받아 합격을 해야 작업이 종료 된 것으로 본다.
- 2) 반입된 장비 및 자재의 부실로 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타 업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해도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.